

---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종합 안내서

---

2021. 2. 22. 기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리 처

# 목 차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개요 .....	1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	2
○ 전문교육기관 인력기준 .....	2
○ 전문교육기관 시설기준 .....	2
○ 전문교육기관 교육운영 기준 .....	5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신청서류(양식) .....	7
□ 자주하는 질문(Q&A) .....	14

##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개요

### ○ 업무담당자 안내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업무 : 054-459-7940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입과·수료보고 관련 : 054-459-7941
- \*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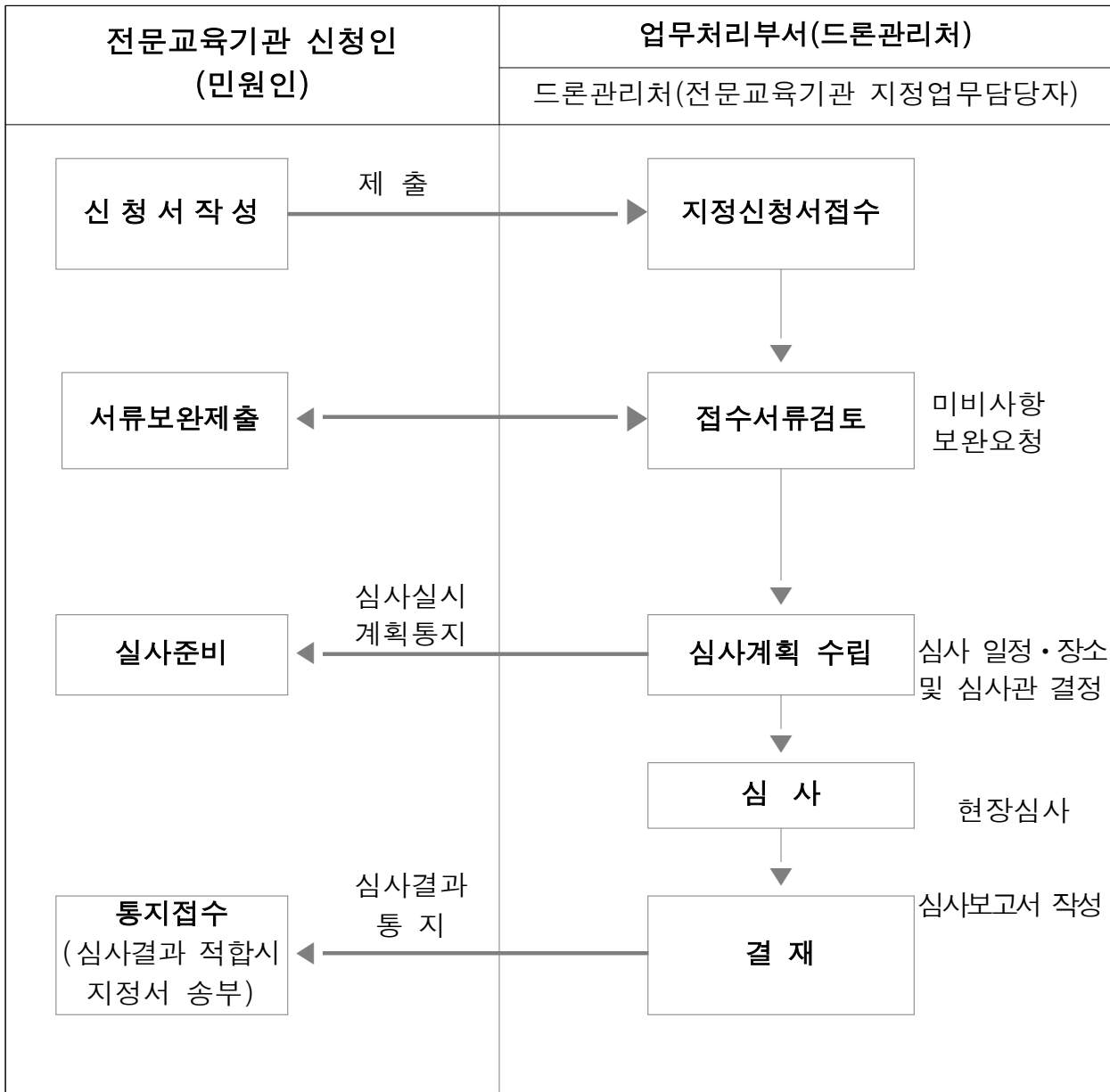
###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요령(고시)

### ○ 적용범위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등)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등)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

### ○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



##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무인비행장치)

### ○ 전문교육기관 인력기준

- '지도조종자 1명 이상'과 '실기 평가조종자 1명 이상'이 필요

\* '21.3월 이전에 등록된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의 1종 교육수행 인정

#### 1. 전문교육기관 운영자

가. 연령 만 25세 이상이며, 전문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항공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2. 전문교육기관 지도조종자

가.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1종에 대한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고, 1종 기체의 조종 경력이 100시간이상이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자  
나. 학과·실기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 3. 전문교육기관 실기평가조종자

가.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1종에 대한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고, 1종 기체의 조종 경력이 100시간이상, 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자  
나. 1종 기체 조종경력 150시간이상, 공단에서 실시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자  
다. 학과·실기교육 및 실기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 '21.3월부터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 비행경력은 1종기체에 한하여 인정

### ○ 전문교육기관 시설기준

#### 1. 학과교육교재

가.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및 비행운영 등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  
나. 비행장치 제작사에서 발간한 매뉴얼 등 비행규정

#### 2. 교육훈련장비

가. 무인비행장치 1종, 2종, 3종에 대한 기체를 1대 이상 각각 보유 필요  
나. 무인비행장치 1종 교육을 위해서는 1종 기체의 안전성 인증검사 완료 필요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에 따라 과태료)  
\* '21.2월까지 안전성인증검사 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 1종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신청서 신청일 기준의 신청 건에 대해 '21.8월까지 "전문교육기관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21.2월까지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시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은 충족하나, 안전성 인증검사 완료 이전에 1종기체로 교육(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

전문교육기관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 유형	인정여부
- 전문교육기관이 안전성인증검사 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성 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21.2월까지)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유지 인정”
- 전문교육기관이 기체제작·판매업체와 1종기체 도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에서 안전성 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유지 인정”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 필요)
- 전문교육기관이 1종기체 보유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정기점검시 확인 후 지정취소 건의)

다. 모의비행교육을 위한 모의비행 시뮬레이터는 차수별 교육생 수에 맞게 구비

### 3. 학과교육 훈련시설

가. 강의실(3㎡ 이상이며 1㎡당 1.2명 이하) 또는 열람실, 사무실(3㎡ 이상), 상담실, 교육생 편의시설(휴게실 등)

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및 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구비, 위생시설은 남녀구분

다. 학과교육 훈련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해야 하며,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 필요

### 4. 실기교육 훈련시설

가. 비행교육을 위해 비행장치 기동에 필요한 공간 및 비행공역 확보 필요

나. 실기교육 훈련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 임대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할 권한 필요(「농지법」, 「하천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이 없을 것)

다. 실기교육 훈련시설에 교육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 또는 불법 건축물이 없을 것  
라. 실기교육 훈련시설 노면은 평탄하게 유지, 배수상태가 양호할 것

마. 위생시설은 남녀구분하고, 풍향·풍속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 필요

바. 실기교육장 입구 등에 목적과 주의사항 표시 필요

사. 교육생 등 조종자 보호를 위한 조종자 안전팬스 및 불특정인의 교육장 진입 또는 실기기동 중 기체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팬스 설치 필요

아. 인접한 의료기관 명칭·약도·연락처, 비상시 의료조치를 위해 필요한 물품비치 필요

종류	규격(1개라인 기준)
무인비행기	길이 150m 이상 × 폭 20m 이상
무인멀티콥터	길이 80m 이상 × 폭 35m 이상
무인헬리콥터	길이 80m 이상 × 폭 35m 이상
무인비행선	길이 50m 이상 × 폭 20m 이상

## 5.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가. 학과교육 : 학과교육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준수 필요

교육과목	교육시간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2
3. 항공역학(비행이론)	5
4. 비행운용 이론	11
계	20시간

나. 모의비행교육 : 1종 20시간, 2종 10시간, 3종 6시간에 대한 모의비행 교육 필요

구분	교육시간
1종	20시간
2종	10시간
3종	6시간

다. 실기(비행)교육 : 1종 20시간, 2종 10시간, 3종 6시간에 대한 실기교육 필요

과목	교관동반 비행시간			단독 비행시간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1. 이착륙	2	1	0.5	3	2	1
2. 공중 조작	2	1	0.5	3	2	1
3.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3	1	0.5	6	2	2
4.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1	0.5	-	-	-
계	8시간	4시간	2시간	12시간	6시간	4시간

## 6. 교육훈련규정 포함 사항

가. 총칙

- 학사운영, 교육기관 명칭, 소재지
- 지정을 받고자하는 교육과정명
- 교육목표 및 목적

나. 학사운영

- 입과기준(피교육생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
- 교육정원(연간 최대교육인원) 및 편입기준
- 수료증명서 발급 및 수료증명서 기재내용
- 기록 및 보관사항(교육생 출결기록, 조종자 및 기체 비행기록부 등)

다. 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

- 학과교육(기준시간 대비 세부 교육운영)
- 모의비행(기준시간 대비 세부 교육운영)
- 실기비행(기준시간 대비 세부 교육운영)

2) 교육평가

- 학과, 모의비행, 실기교육 평가기준(지침) 및 평가표
- 정기평가(교육원장의 소속 지도조종자 평가)
- 수시평가(수시평가 근거)

3) 교육계획

- 평일반 일자 또는 요일별 교육시간표
- 주말반 일자 또는 요일별 교육시간표

○ 전문교육기관 교육운영기준

1. 교육운영 기준

- 가. 차수별 이론교육은 1종, 2종, 3종 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교육진행 가능, 실기교육은 기종별 이수시간(1종 20시간, 2종 10시간, 3종 6시간) 준수
- 나. 차수당 교육생(1종·2종·3종)은 차수당 교육기간이 15일(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

※ 교육기간 15일(120시간) 기준 교육인원 산정 예시

사례1) 학과모의(40시간) + 실기 1종 4명(80시간) = 120시간

사례2) 학과모의(40시간) + 실기 1종 2명(40시간) + 2종 4명(40시간) = 120시간

사례3) 학과모의(40시간) + 실기 1종 1명(20시간) + 2종 3명(30시간) + 3종 5명(30시간) = 120시간

사례4) 학과모의(30시간) + 실기 2종 6명(60시간) + 3종 5명(30시간) = 120시간

무인비행장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인원 산정표																
교육시간 (시간)		교육인원(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종	학과	20	20	20	20	-	-	-	-	-	-	-	-	-	-	-
	모의	20	20	20	20	-	-	-	-	-	-	-	-	-	-	-
	실기	20	40	60	80	-	-	-	-	-	-	-	-	-	-	-
	계	60	80	100	120	-	-	-	-	-	-	-	-	-	-	-
2 종	학과	20	20	20	20	20	20	20	20	20	-	-	-	-	-	-
	모의	10	10	10	10	10	10	10	10	10	-	-	-	-	-	-
	실기	10	20	30	40	50	60	70	80	90	-	-	-	-	-	-
	계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	-	-	-	-	-
3 종	학과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모의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실기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66	72	78	84	90
	계	32	38	44	50	56	62	68	74	80	86	92	98	104	110	116

다. 연간 최대교육인원은 1차수당 최대교육인원(교육정원), 실기교육장 규모(라인 수),  
연간 최대교육기간(교육차수)을 감안하여 기종별로 구분

※ **연간 최대교육인원 예시(실기라인 2개인 경우),**

- 1) 평일(1종) : 교육정원(4명) × 실기라인(2개) × 교육차수(17차) = 136명
- 2) 평일(2종) : 교육정원(9명) × 실기라인(2개) × 교육차수(17차) = 306명
- 3) 평일(3종) : 교육정원(15명) × 실기라인(2개) × 교육차수(17차) = 510명
- 4) 주말(1종) : 교육정원(4명) × 실기라인(2개) × 교육차수(7차) = 56명
- 5) 주말(2종) : 교육정원(9명) × 실기라인(2개) × 교육차수(7차) = 126명
- 6) 주말(3종) : 교육정원(15명) × 실기라인(2개) × 교육차수(7차) = 210명

라. 교육생의 입과/수료 확인을 위해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같은  
주차에 교육차수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항은 가능하며, 교육 종료시 항공교육  
훈련지원시스템을 통해 수료보고

※ **동일 주차에 교육차수 운영 사례**

- 사례1) 평일반(월요일) 주 1일만 운영하는 경우, 최대 15주로 교육시간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평일반(화~금요일) 주 4일은 3주차 3일로 별도 교육시간표를 개설하여 운영 가능
- 사례2) 평일반(월~화요일) 주 2일만 운영하는 경우, 최대 7.5주로 교육시간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평일반(수~금요일) 주 3일은 5주차로 별도 교육시간표를 개설하여 운영
- 사례3) 수~일요일(주 5일)은 종전과 같이 평일/주말 혼재하여 교육운영 금지

◆ '21.2월까지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21.3월까지 교육훈련규정을 개정  
(교육훈련 개정전 1~3종 교육가능)추진하고, 공단에서 검토후 일괄 승인예정



#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신청서류(양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교육기관	명칭	대표 전화번호 :	
	(이론교육장 주소)	대표자 휴대전화 :	
	(실기교육장 주소)	담당자 E-mail :	
		담당자 전화번호 :	
교육과정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멀티콥터 과정		
교육생의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교육생 정원 : 평일반 00명 / 주말반 00명</li> <li>• 연간 교육생 정원 : 평일반 00명 / 주말반 00명</li> <li>• 연간 교육 차수 : 평일반 00차수 / 주말반 00 차수</li> </ul>		
교육기간	평일반 : 0주 과정 (00일) 주말반 : 0주 과정 (00일)		
현장확인 검사희망일			

「항공안전법」 제1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인력현황 총괄

구분	이름	자격종류(자격번호)	생년월일	4대보험가입일
대표(설치자)				
실기평가조종자				
지도조종자				
사무직				

설치자

성명	
경력	
자격증명	

실기평가조종자

성명	
경력	
자격증명	

지도조종자

성명	
자격증명	

행정요원

성명	
자격증명	

실기평가조종자 교육이수증(교관성명)

\* 공단 실기평가과정 이수증

지도조종자 교육이수증(교관성명)

\* 공단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증

실기평가조종자(비행자격증명서)

\* 실기평가조종자 조종자 증명 스캔

실기평가조종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실기평가조종자 고용여부 확인(전문교육기관 인력요건)

지도조종자(비행자격증명서)

\* 지도조종자 조종자 증명 스캔

지도조종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지도조종자 고용여부 확인(전문교육기관 인력요건)

행정직원(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행정직원 고용여부 확인(행정직원 확보시)

□ 교육시설 현황

1. 학과 강의실 및 모의비행 교육시설

교육 시설명	면 적(㎡)	학과교육장 주소(도로명 주소)
사무실		
휴게실		
이론교육장(강의실)		
⋮		

2. 실기교육장 교육시설

교육 시설명	면 적(㎡)	실기교육장 주소(도로명 주소)
실기비행장		
무인멀티콥터 장비실		
상담 및 휴게실		
⋮		

□ 교육장비 현황

1. 학과 강의실 및 모의비행 교육장비

장비 및 비품명	규 격	수 량
빔프로젝터		
모의비행 장치		
컴퓨터		
모니터		
⋮		

2. 실기교육장 교육장비

장비 및 비품명	규 격	수 량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컴퓨터		
모니터		
책 상		
의 자		
냉온풍기		
냉온수기		
충전기		
⋮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제원표(1종)

제 조 사	
규 격	
모 델	
이륙중량	
지체중량	
최대비행시간	
최대속도	
제 작 일	
탑재중량	
배 터 리	

\* 1종기체 사진 첨부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제원표(2종)

제 조 사	
규 격	
모 델	
이륙중량	
지체중량	
최대비행시간	
최대속도	
제 작 일	
탑재중량	
배 터 리	

\* 2종기체 사진 첨부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제원표(3종)

제 조 사	
규 격	
모 델	
이륙중량	
지체중량	
최대비행시간	
최대속도	
제 작 일	
탑재중량	
배 터 리	

\* 3종기체 사진 첨부

□ 시설 및 장비 사진

1. 학과 강의실 및 모의비행 교육장비 (서울)

학과 강의실 전경		모의비행 소프트웨어	
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남자 화장실		소화기, 정수기	
여자 화장실		냉온풍기	

2. 실기교육장 교육장비

제1교육장 전경		제2교육장 전경	
조종자 대기실		조종자 대기실	
무전기		상담실 및 휴게실	
충전기		냉난방기 정수기	
소화기		안전모자	

5. 교육기관 표시물(입간판 등)

학과교육장	실기교육장

6. 실기교육장 안전펜스

실기교육장 (올타리)	실기교육장
팬스설치 사진	조종자 팬스

7. 실기교육장 구급약 배치 등

구급약 배치	경고문 부착
배치사진	배치사진

기타 교육원 관련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
3. 기체별(1종, 2종, 3종) 기체신고증명서
4. 기체별(1종, 2종, 3종) 기체보험증서
5. 이론 및 실기교육장 임대차 계약서
6. 실기교육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지, 하천 등 토지비목 확인

## □ 자주하는 질문(Q&A)

○ (질문 1) '21.3월 자격개편에 따라 1종기체 교육을 위해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을 항공안전기술원에 하였는데, 인증검사 전 교육시행이 가능한지?

☞ (답변) 1종 기체에 대한 안전성인증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1종 기체에 대한 비행(교육)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21.3월부터 전문교육기관은 1종, 2종, 3종의 기체를 구비해야 하는 바, '21.3월 이전 1종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은 충족('21.8월까지) 되어 2종, 3종에 대한 교육은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2) 현재 전문교육기관에서 1종기체 구비를 위해 기체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제작사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 (답변) 전문교육기관에서 구매하려는 기체를 제작사에서 안전성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문교육기관과 제작사 간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 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질문 3) '21.3월 자격개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생 모집시 차수별 교육과정은 1종, 2종, 3종을 구분하여 실시해야하는 지?

☞ (답변) 개편되는 자격체계에 따라 1종, 2종, 3종의 비행경력시간이 각각 상이하나, 차수별 교육생 모집시 1종, 2종, 3종 구분없이 교육생의 교육시간이 15일(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종합안내서 6p 참고) 다만, 해당차수의 수료보고는 기종별 교육종료일중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4) '21.3월부터 1종, 2종, 3종을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 변경이 필요한데, 공단에서 교육훈련규정을 승인하기 전까지 1종, 2종, 3종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답변) 교육훈련규정 개정 전 '21.3월1일부터 1종, 2종, 3종에 대한 교육생 모집과 교육운영이 가능하며, '21.3월말까지 기 인가된 교육훈련규정의 수정을 항공교육훈련 포털을 이용하여 공단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5) 현재 전문교육기관에서 자체중량 12kg 기체로 지도조종자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이 있으나, '21.2월까지 100시간의 비행경력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 '21.3월 이후에도 기존의 기체로 지도조종자 교육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21.3월부터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의 비행경력을 1종기체의 비행



경력으로 한정됨에 따라 해당 교육생의 부족한 비행경력은 1종기체(안전성인증검사가 완료된 기체)로 비행을 실시해야 비행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 6)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신규 인가 신청시 지도조종자와 실기평가조종자가 동일인이어도 전문교육기관 인가가 가능한지?

☞ (답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위해서는 지도조종자 1명, 실기평가조종자 1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일인인 경우 인가가 불가합니다.

○ (질문 7) 무인멀티콥터 전문교육기관 신규 인가 신청시 실기교육장이 과수원이고, 비행금지구역내에 있는데 이 경우 전문교육교육기관으로 인가될 수 있는지?

☞ (답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농지 일시사용허가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비행금지구역인 경우 지방항공청 등 공역관할 기관의 비행승인이 있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 8) 무인멀티콥터 전문교육기관 신규 인가 신청시 실기교육장이 규격이 길이가 100m, 폭이 85m인 경우 몇 개라인 인가가 가능한지?

☞ (답변) 실기교육 1개라인 기준 길이 80m, 폭 35m가 기준임에 따라 해당 실기교육장의 경우 2개라인의 실기교육장 인가가 가능합니다.

○ (질문 9)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교관, 기체, 실기교육장이 추가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최초 전문교육기관 인가 이후 교관, 기체, 교육장 등의 변경시 관련 공문을 공단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교관 및 기체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으로 변경승인이 가능하나, 실기교육장의 경우 추가 현장실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장실사 결과 이후 교육운영이 가능합니다.

○ (질문 10)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신규지정 시 이론교육장과 실기교육장이 다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지?

☞ (답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이론교육장과, 실제 비행교육을 수행하는 실기교육장이 떨어져 있어도 전문교육기관 인가가 가능하나, 타 입법례에 따라 이론교육장과 실기교육장이 행정구역상 ‘도’ 경계를 벗어나 위치하는 경우(서울특별시-경기도는 동일 권역으로 인정)에는 인가가 불가합니다.

## □ 자주하는 질문(Q&A) - 필요서류

### 1-1.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

☞ 전문교육기관 지정 희망 시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

- ▶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규정 1부  
전문교육기관 인력, 시설, 장비 서류 양식 1부  
전문교육기관 설립관련 법령 1부  
전문교육기관 인가심사 체크리스트 1부

### 1-2. 항공교육훈련포털 입과/수료보고

☞ 항공교육훈련포털 입과/수료/담당자 변경 등 문의사항

- ▶ ‘항공교육훈련포털 담당자 매뉴얼’ 참고
- ▶ 교육기관에게 ‘교육기관 담당자 매뉴얼’ 1부 송부
- ▶ 입과/수료보고는 접수순으로 진행되어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
- ▶ 3월 이후 입과/수료보고 방법은 2/24~25일 양식 훈련포털에 공지 예정

### 1-3. 실기평가자 변경

☞ 변경하려는 교육기관에 서류 요청

- ▶ 전문기관지정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or 재직증명서 1부  
실기평가훈련 이수증명서 1부  
교관과정 훈련이수증명서 1부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사본 1부  
실기평가조종자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훈련포털 심사보고서 부정기파일에 전문교육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변경 보고 자료 업로드

### 1-4. 시설 신청 (라인증설, 실기교육장 추가)

☞ 변경하려는 교육기관에 서류 요청

- ▶ 전문교육기관 종사 인력 현황표 1부  
전문교육기관 변경신청 문서작성 샘플 1부  
시설변경 전 후 비교 작성 1부  
설치 평면도 1부  
훈련포털 심사보고서 부정기파일에 전문교육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변경 보고 자료 업로드  
(교관인력, 차수인원 변경 시 - 교육훈련규정 수정)

\*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7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 1-5. 사업자등록증 변경

☞ 교육기관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요청 및 변경사항 안내

- ▶ (기관명 미변경 시)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1부 요청
  - 4대보험완납증, 재직증명서, 기체 보험 등 변경 요청
- ▶ (기관명 변경 시)
  - 지정서 1부 재발급
  - 교육훈련규정, 현황표, 등 기관명 변경에 따른 변경되는 서류 요청 및 4대보험완납증, 기체 보험 등 변경 요청

### 1-6. 기체변경

☞ 교육훈련포탈 업로드 요청

- ▶ 훈련포탈 심사보고서 부정기과일에 전문교육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변경 보고 자료 업로드 및 송부 요청

1-7. 교관변경

☞ 변경하려는 교육기관에 항공교육훈련포탈 정보 수정

- ▶ 항공교육훈련포탈 교육기관담당자 로그인 → 기관 및 과정관리 → 전문교육기관 관리 → 해당 교관 명단 수정 (교관 명단 파일 업로드) → 심사보고서 부정기과일에 전문교육기관 인력, 시설, 장비등 변경 보고 자료 업로드  
(교관인력, 차수인원 변경 시 - 교육훈련규정 수정 및 송부 요청)

1-8. 전문교육기관 담당자 변경 신청

☞ 변경하려는 교육기관에 매뉴얼 전송 및 항공교육훈련포탈 안내

- ▶ 항공교육훈련포탈 교육기관 담당자 업무절차 매뉴얼 1부 전송
- ▶ 항공교육훈련포탈 교육기관담당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문교육기관 승인신청 → 담당자 승인신청 → 근거서류(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첨부

1-9. 부지관련

☞ 사용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

- ▶ 35m x 80m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분만 받는 경우 X
  - 하천 : 하천법에 따라 홍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침수, 인명피해 위험 가능 → 지자체 허가 필요
  - 농지 : 농지는 농지법상 타용도 사용 불가 지자체에 승인 받을 경우 사용 가능 (농지타용도일시 사용허가)
    - 1, 2종 주택/근린시설 지자체 허가 필요

1-10. 교육일정 변경 관련 문의

☞ 주말 교육생 평일 교육 및 평일 교육생 주말 교육, 인원 추가 시 이론교육, 모의교육 시기라면 주말교육이나 평일교육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교육훈련규정상 평일과 주말이 나뉘져 있으므로 교육기간 내 평일반 교육생이 주말 교육 X, 주말 교육생이 평일 교육 X  
→ 입과보고상 교육기간 지난 후 주말교육 평일교육은 상관 없음

1-11. 전문교육기관 1종기체 보유 증빙

☞ 법 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는 1종기체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안전성인증검사가 오래걸리는 경우 안전성인증검사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

- ▶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http://www.kiast.or.kr)) 로그인 → 항공인증 탭 초경량비행장치 클릭 → 신청정보 소유자, 신청자, 진행현황 캡처 후 보관